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34

2024년 6월 27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박강산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강산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 한 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함.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잔식)을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 잔식 기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라. 학교급식 잔식 기부 중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박강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34 호로 발의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감량하여 잔반처리 비용을 절감시키고 탄소중립 가치를 반영한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4년간(2020~2023년) 서울시 학교급별(초·중·고) 학교급식 잔반 처리량 및 발생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잔반 처리량은 2020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이러한 학교급식 잔반처리 비용 또한 2.4배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교당 연평균 처리량은 22,411kg, 처리비용은 4,417천원(학생 1인당 처리량: 약 36kg, 처리비용: 약 7천원)으로 나타나1) 예산낭비 및 환경오염을 극심하게 초래하는 학교급식 잔반 처리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

[표-1] 최근 4년간(2020~2023년) 학교급별 급식인원 현황

구분			학교	수(교)			급식제공	인원수(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599	599	600	599	214,978	368,048	438,767	427,656
학교급 별	중	310	318	318	317	97,711	148,460	191,514	187,933
	고	299	294	296	297	186,453	223,473	270,628	277,497
	계	1,208	1,211	1,214	1,213	499,142	739,981	900,909	893,086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표-2] 최근 4년간(2020~2023년) 급식 잔반 처리량 및 처리비용

구분		총 처리량(단위: Kg)					총 처리비용(단위: 천원)			
	正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	5,114,872	11,598,498	15,033,225	15,013,110	1,163,680	2,345,288	3,031,219	2,976,974	
학교	중	2,410,127	5,596,416	7,506,177	7,385,518	504,720	1,070,523	1,532,457	1,412,438	
학교 급별	고	6,025,284	9,420,454	11,693,555	11,807,318	1,134,677	1,746,160	2,220,068	2,269,483	
	계	13,550,283			34,205,946	2,803,077	5,161,971	6,783,744	6,658,895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¹⁾ 처리량(연평균·학생 1인당), 처리비용(연평균·학생 1인당) 산출근거

110(20210-20) 1110(20210-20) 2221				
구분	산출식	결과		
처리량(연평균)	108,604,554kg(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잔반 처리량)/ 4,846교(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학교 수)	22,411.17(kg)		
처리비용(연평균)	21,407,687천원(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잔반 처리비용) / 4,846교(최근4년간(2020~2023년)총학교수)	4,417.59(천원)		
처리량(학생1인당)	108,604,554kg(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잔반 처리량)/ 3,033,118명(최근4년간(2020~2023년)총급식제공인원)	36(kg)		
처리비용(학생 1인당)	21,407,687천원(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잔반 처리비용) / 3,033,118명(최근 4년간(2020~2023년) 총 급식 제공 인원)	7(천원)		

²⁾ 대한급식신문, '3년간 146억 쏟아 부은 서울 학교 잔반처리비', 2023.11.21., 연합뉴스, 10년새 1인당 식품 폐기물 20%↑·처리비용 연 1조···환경 '발목', 2021.12.22.

[※] 작성기준: 학년도(2020. 3. 1.~2024. 2. 29)

[※] 학교 수: 조리교(공동조리교는 주조리교에서 통합 보고)

[※] 인원: 학생·교직원 등 총 급식인원(조식, 중식, 석식 합산)

[※] 작성기준: 학년도(2020. 3. 1.~2024. 2. 29)

- ※ 처리량: 전처리량 포함 총 처리량
- ※ 처리비용: 자체처리(음식물쓰레기 감량기로만 처리) 학교는 비용계산에서 제외
- ※ 2020~2021학년도 총 처리량 및 비용의 변동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학교급식 단축운영,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함(2022학년도부터 급식 정상운영).

○ 이러한 학교급식 잔반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 정 처리를 위하여 국회는 2013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은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차 및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3)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3차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3~'26년)」에 연차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cdot 군 \cdot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오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오부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 오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부「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3) 「}폐기물관리법」[시행 2013. 7. 16.]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표-3] 서울시교육청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 계획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발생량(톤, 연간)	33,890	33,552	33,217	32,885
'22년 대비 감축량(톤, %)	342(1%)	338(1%)	335(1%)	332(1%)

[※] 출처: 서울시교육청「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p.68

- 또한「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별음식물쓰레기 발생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저감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자체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기본방침을 마련한 상황입니다4).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초·중·고 26곳을 '기후 오락(樂)실을 위한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빈그릇 운동')' 시범학교로 지정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학교급식 잔식을 기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향후 기부단체 추가 발굴과 참여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5).
-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의 잔식을 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 하지 않아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 는바,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잔식을 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 및 잔식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⁴⁾ 서울시교육청「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p.78, 2024.2.

⁵⁾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남는 학교 급식 어려운 이웃에 전달', 2024.5.15.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9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의 목 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 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기부식품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 서「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 2)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대한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급식의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 제3조는 학교급식의 잔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감, 학교장,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법적인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⁶⁾

안 제3조제1항에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에 대해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한 부분은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등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 체의 식품등 기부 등을 지원·장려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⁸⁾,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⁷⁾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p.90-101.

^{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 식재료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9).

- 따라서 안 제5조는 이러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잔식기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항에 대해 학교급식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조항에서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와 동일하게 "4년"으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만 되어 있으며, 별 도의 시책 수립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 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이 서울시교 육청의「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 주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책임의 면제(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는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교육감이 학교급식관계교 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식의 기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책임 면제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한 임의규정을 "면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039, 2024. 6. 5.).

- 그러나 안 제8조가 급식기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교육감이 면제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정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칙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서는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제공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¹⁰⁾, 행정처분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은 없습니다.

- 또한 안 제8조의 대상인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 「학교급식법」11)에 따라 학교장과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으로, 징계등 행정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12)은 잔식기부에 대한 피해 발생을 징계처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하위법규인 조례가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없는 조례상 행정처분의 면제 규정은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 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따라서 안 제8조에서 규정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한 책임 면 제'는 동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형법」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¹¹⁾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 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표-4] 입법고문 자문결과

구분	동 조례 제8조 (책임의 면제)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의견 1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다목상 지방지체단체의 고유사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행정처분 또는 징계 등 일정한 책임을 면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거나 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안 중 행정처분(징계)의 면제 사항을 '고유사무'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처분(징계)의 면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라는 지방지체단체의 고유사무에 관련된 사무라는 점에서 고유사무로 볼 수 있겠으나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음.
의견 2	- 상위 법령(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대상,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법령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면제 대상'을 하위법규인지방조례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조례안의 책임면제 조항은 실질적으로 관계교직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위한 정당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조례안 제8조의 '책임면제 가능 조항'은 '잔식기부에 관한 피해발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책임면제를 가능하게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조례안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의견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음.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다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부가 제정한「식품기부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법령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주기를 "4년"으로 수정함(안 제5조).
- 법률의 위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처분의 면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Ⅲ.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 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834

제안연월일: 2024년 6월 27일

제 안 자: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주기를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주기와 동일하게 수립하도록 수정함.
- 또한 안 제8조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바, 이는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규정임으로 이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주기를 "4년"으로 수정함(안 제5조).
- 법률의 위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처분의 면제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5조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	
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	
다)을 <u>3년</u>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	<u>4년</u>
다.	 .
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1. ~ 4. (원안과 같음)
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8조(책임의 면제) 교육감은 기부식품	<u>〈삭 제〉</u>
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	
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	
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u>수 있다.</u>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	<u>제8조</u> (원안 제9조와 같음)
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
- 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 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

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 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잔식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

- 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
- 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